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19. . .
발 의 자	장세구 의원 외 4명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세구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변 호	

발의연월일 : 2019. . .

발 의 자 : 장세구 · 김낙관 · 안주찬 · 이선우
이지연 의원(5인)

1. 제안이유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신설 및 관련 조례 별도 제정에 따른 중복 조문 및 조항 삭제(안 제1조, 안 제5조~안 제9조)

나.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지정(안 별표 1)

- 읍·면·동 축종별 제한구역 추가
 - 「농지법」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신설
- 읍·면·동 축종별 제한구역 구분에 축종(말) 추가
-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제한거리 확대
 - 소(한우, 육우) : 250m 이내 → 500m 이내
 - 닭(육계)
 - 20,000마리 미만 : 250m 이내 → 700m 이내
 - 20,000마리 이상 ~ 50,000마리 미만 : 450m 이내 → 700m 이내
 - 50,000마리 이상 : 650m 이내 → 700m 이내

-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이내 → 1km 이내
 -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조문 삭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신설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지법」, 「하천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시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 각각 삭제한다. 제10조를 제5조로 한다.

별지서식,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제10조 조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진흥지역의 가축사육제한, 축종별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제한거리, 국가하천, 장기요양기관 경계로부터 제한거리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1항 별표1의 제1호 상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가축사육제한,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구미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이 고시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허가, 신고 및 그 밖의 행위(허가 및 신고의 신청 등)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1. 읍·면·동 축종별 제한구역

구 분	제 한 구 역	
	소(한우·육우), 젖소, 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 말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공 통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동지역	전지역	전지역
선산읍	교리, 노상리, 동부리, 화조리, 이문리, 완전리	교리, 노상리, 동부리, 화조리, 완전리, 이문리
고아읍	관심리, 대망리, 신촌리, 황산리, 횡산리, 외예리, 내예리, 원호리, 문성리, 향곡리, 예강리, 오로리, 봉한리	관심리, 이례리, 오로리, 대망리, 신촌리, 황산리, 횡산리, 외예리, 내예리, 원호리, 문성리, 다식리, 괴평리, 송림리, 봉한리, 향곡리, 예강리
무을면	송삼리	송삼리, 무등리, 무수리
옥성면	주아리	주아리, 농소리
도개면	궁기리	궁기리
해평면	월호리	월호리, 낙성리, 오상리, 괴곡리, 문량리, 송곡리, 해평리
산동면	적림리, 성수리	동곡리, 도중리, 적림리, 신당리, 임천리, 인덕리, 봉산리
장천면	상장리	상장리, 하장리

2. 축종별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제한거리

구 분	제 한 거 리	
소(한우·육우)	—	500m 이내
젖소, 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 말	—	500m 이내
돼지	1,000마리 미만	800m 이내
	1,000마리 이상 ~ 3,000마리 미만	1,000m 이내
	3,000마리 이상	1,200m 이내
닭(육계)	—	700m 이내
개	100마리 미만	1,000m 이내
	100마리 이상	1,500m 이내
닭(산란계 등), 오리, 메추리	20,000마리 미만	1,000m 이내
	20,000마리 이상 ~ 50,000마리 미만	1,300m 이내
	50,000마리 이상	1,500m 이내

3.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이내 구역,
지방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 구역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 구역

5.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

< 비고 >

1. “주거 밀집지역”은 가구간의 거리가 지적도 부지경계선에서 반경 100미터를 기준으로 5가구 이상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가구”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 수)을 기준으로 하며, 「농어촌정비법」 상의 빈집은 가구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전기, 수도시설 기준)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축종별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제한거리의 3배수를 적용한다.
※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3. “마리 수”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따른 축종별 마리당 축사면적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실제사육마리수를 기준으로 한다.
4. “거리”는 축사부지(예정지)경계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거밀집지역의 가구부지경계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상 직선거리로 산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u>시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 ----- ----- ----- <u>시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5조(가축분뇨의 수거 및 수거수수료) 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및 자원화·처리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거토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사정이	<삭 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가축분뇨의 수거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처리장 사용료 등) ① 처리장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자

2. 공공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직접 처리하고자 하는 축산농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시장은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가 반입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서식의 가축분뇨 반입대장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천재지변,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가축분뇨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삭 제>

④ 처리장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공공처리시설 징수 교부금 교부) 시장은 대행업자가 가축 분뇨 수집·운반 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장에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분기 10일까지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농가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한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가축사육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 100분의 50
2.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파괴 또는 붕괴된 경우 : 전액
3. 구제역 등 가축의 질병이 확산되어 가축분뇨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 전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삭 제>

<삭 제>

<u>인정하는 경우</u>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축산농가 소재지의 읍·면·동의 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집운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u>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u> <u>제10조 (생 략)</u>	<u><삭 제></u> <u>제5조 (현행 제10조와 같음)</u>
---	---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없이 설치되거나 변경된 배출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그 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사육을 위탁(이하 "위탁사육"이라 한다) 할 수 없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신고대상 배출시설)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개정 2015.3.24.>

신고대상 배출시설(제8조 관련)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소(젓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200㎡ 이상 45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100㎡ 이상 200㎡ 미만으로 한다.
젓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1,350㎡ 미만으로 한다.

□ 「농지법」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하천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다.

②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1.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3.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 가.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貫流)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 나.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 다.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 라. 그 밖에 범람으로 피해가 일어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하천

③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시·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7. 1. 17.>

⑤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방하천의 지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⑥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⑦2 이상의 하천이 합류되거나 분기되는 지점에서의 하천 구간의 경

계는 하천관리청이 정하되, 하천관리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관계 하천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26.>

1. 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에 등재(登載)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제2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려면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와 고시에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

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와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을 고시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⑨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2. 6.]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형도면 작성·고시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을 위한 세출예산이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작성 20,000,000원 × 1식

4. 작성자

- 환경보전과 수계수질계장 엄승진(480-5281)
- 환경보전과 공업 9급 김태오(480-5284)